202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문

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?

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,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으로, 기업이 디지털 일자리 직무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

1 지원대상 기업

①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

- 조건 :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)

②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시 사업 참여 가능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
- 지식서비스산업
- 문화콘텐츠산업
-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-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
2-1 지원요건 (기업)

①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사업참여가능

-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**IT 관련 직무**여야 참여 가능
- **콘텐츠 기획형, 빅데이터 활용형, 기록물 정보화형, 그 외 기타형으로 직무유형 해당시 사업참여가능 (3p. 참여 유형 참고)!**

②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
<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(예시) >

|----------(직전 1개월)----------|----------|

7.21 신청서 제출(8.20) 실제 채용일

❖ 고용조정 이직

<고용보험 상실사유> 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(대분류)

- **23. (중분류)**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

 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, ②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,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, ④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,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, ⑥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

- **26.(중분류)**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

 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

③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통해 사업참여신청 이후 발생한 신규 채용건에 대해서만 사업참여 가능

- **기존에 근무 중인 근로자는 사업 신청 불가** (사업신청 승인 이후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)

<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>

□ I유형: 콘텐츠 기획형

○ 개요: 홈페이지 기획·관리, 유튜브·SNS **콘텐츠 관리** 등 **온라인 분야의 기획·관리·운영에 관한 직무**

○ 직무 예시

- **홈페이지** 인터페이스, 메뉴 등에 대한 기획·개발·관리 및 지원
- 대내·외 **설명·홍보·교육** 등의 목적으로 **동영상, 카드뉴스, 웹툰** 등 **온라인 콘텐츠** 기획·제작·관리 및 지원
- **유튜브, SNS**(블로그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), **모바일 메신저**(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), **뉴스레터** 등 **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**의 **기획·관리·운영 및 지원**
- 기타 **온라인을 활용**한 기획·제작·관리·운영 및 지원을 **내용**으로 하는 업무

□ II유형: 빅데이터 활용형

○ 개요: 어플리케이션·소프트웨어 개발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분석 등 **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**

*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, 새로운 IT 기술·프로그램·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

○ 직무 예시

- 업무에 활용할 목적의 **빅데이터 자료 수집·정리·분석 및 지원**
- 기업 자체 보유 정보 및 공공·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**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·지원**
- **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클라우드** 등을 활용한 **연구·개발 및 지원**
-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**미래형 신산업 분야**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

□ III유형: 기록물 정보화형

○ 개요: 기업 내 문서,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**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**

○ 직무 예시

-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**문서, 기록물**에 기재된 **정보**의 **전산 입력**
- 중간·최종 **제조물**의 **사진 촬영, 3D 스캔** 등을 통한 **DB 구축·지원**
- 지리·인물정보 등 **비제조물**에 대한 사진·영상 촬영 등을 통한 **DB 구축·지원**
- 기타 IT를 활용하여 **오프라인** 자료를 **디지털화**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

□ IV유형: 기타형

○ 개요: 위 I~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

○ 직무 예시

- 전사적자원관리(ERP) 시스템 도입, IT 활용 업무재설계(BPR) 등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
- 기타 I~III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(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)

2-2 지원요건 (청년)

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
- **만 18세 미만인 자는「근로기준법」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을 확인**
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단, 다음의 경우는 취업 중이 아닌 자

-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-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*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
③ 근로조건

- (근로계약)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
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/단시간 근로자 제외
- 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
-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

* 신청기간 초과 시 지원 제외 (예: '20.12.20. 채용 시 ' 21.8.31.까지만 신청 가능)

3-1 지원제외 (기업)

①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

*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
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

제2조, 「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*

*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

**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

② **국가 및 공공기관 등**

-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행정기관
-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회,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법원, 「헌법재판소법」에 따른 헌법재판소,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
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④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
* (제외기간)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사전정보 공표목록 > 산재예방/산재보상 >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

* (제외기간)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

⑥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
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- 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(예, 조선업)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

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디지털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

3-3 지원제외 (청년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
②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

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있는 자

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⑤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
-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-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
❖ **관련 사업주**(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4항)

-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
-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
  (예: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)
-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

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
- 다만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⑦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

※ 다만, 아래 가~다의 경우는 지원 가능

가.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(수료자 포함)

❖ **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**

- 기업은 청년의 **졸업예정증명서**를 **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**

나.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

다.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
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** 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4 지원내용

① 참여기업이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

② 지원한도

-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채용계획을 수립

* 예. 사업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, 근로자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
- 다만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

* ▲채용 필요성 ▲직무내용 ▲예상 결과물 ▲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

	지원한도	별도 승인 시
5인 이상 기업	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	최대 2배 (최대 60명)
5인 미만 기업	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	최대 2배

* 예. 1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5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3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

- 참여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

-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.

5 지원수준

①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(최대 월 180만원)와 간접노무비(월 10만원)로 구성된다.

-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

< 지급 예시 >

월 보수 총액	지급액	간접노무비
200만원 이상	**180만원** (최저임금 100%)	**10만원**
200만원 미만	**지급 임금의 90%** (원단위 절사)	**10만원**

②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

- 단,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6 지원절차

※ 유의사항) 반드시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해야 지원금 혜택 받을 수 있음

❶	❷	❸	❹
워크넷 참여신청 **(운영기관 선택)** **www.work.go.kr/youthjob**	**자격요건심사 및 지원협약체결** **(운영기관-기업)**	**청년 채용 및 채용자 명단 통보** **(www.work.go.kr/youthjob) 및 서류제출(운영기관)** **(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)**	**지원금 신청 및 지급** **(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기업지원금 신청)**

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사이트 워크넷 통해서 기업명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업참여신청 - **신청 시 운영기관명 부산경영자총협회 클릭**

② 사업참여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 심사 및 지원 협약체결

③ 협약체결 이후 청년채용 및 사업신청서류 메일 접수

- 신청서류는 자격 요건 심사 후 담당자 메일 발송

④ 청년 채용 후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기업지원금 신청

- 다만, 기업지원금 신청은 일괄 접수 가능 **(예: 3개월 경과후 3개월분 신청)**

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Q&A

1.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인가요?

□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·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(기록물 정보화형), 기업의 홈페이지·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(콘텐츠 기획형), 인공지능·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(빅데이터 활용형) 등을 의미함

○ 구체적인 직무 유형 및 예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thjob)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

2.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?

□ **3개월 이상**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, **정규직**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

○ 또한, **주 15시간 이상 근무**, **최저임금* 이상 지급**해야 하고, **4대 보험**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)에 가입해야 함

* (`20년)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,310원

3.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?

□ **지원 인원**은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수 이내, 최대 30명까지 가능함

* 예를 들어.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,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,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

○ 단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·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

* ▲채용 필요성 ▲직무내용 ▲예상 결과물 ▲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·승인 후 채용

** 예. 1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→ 별도 승인시 20명
50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→ 별도 승인시 60명
3인 기업: 기본 지원한도 3명 → 별도 승인 시 6명

○ 또한,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**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됨**

- 예를 들어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,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

4.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**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**로부터 **인건비 지원**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**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**

5. 신청 기한이 있나요?

□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**'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**하고, 운영기관에 **명단을 통보**해야 함

○ 기업은 **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** 지원금을 **신청**할 수 있고, 최대 청년 채용 후 **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신청 가능**

- 예컨대 '20.12.15에 채용시 '21.8.31까지 신청할 수 있음

6.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?

□ **참여 신청 단계**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,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

*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)
* (1~4인 기업의 경우)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,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

○ 추후 **청년을 채용**하여 **채용자 명단 통보단계**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,

○ **지원금 신청 단계**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

○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음